

小作制度와 爭議

은 상 오
(향토사 연구 위원)

1. 개 설

소작제는 토지를 소지하지 못한 농민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지대를 지불하는 경작 제도를 말한다.

남의 토지를 이용해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소작농이라 하고, 토지를 소작농에게 빌려주는 자를 지주라 한다.

[소작에 관한 관습 조서](조선 총독부 중추원 편)는 우리 나라의 소작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연혁, 종류와 보통 소작과 특종 소작 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소작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우리 나라의 소작 제도는 일찍 고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 시대는 귀족 사원의 사적인 대 토지를 노비, 빈민, 일반 백성 등이 경작했던 듯 하며, 고려 시대에는 수확의 절반 조로서 지주에게 바치는 전호가 나타났으

나 전기까지는 지주와 전호의 분화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하였고, 고려 중기 이후는 장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 지주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지주는 대부분 관리, 귀족 등 사대부 계급과 사원 등으로서 사급, 겸병, 개간 등으로 사유 토지를 확장해서 노비, 가난한 양민으로 하여금 경작시켜 지대를 받았다.

고려 말기에 실시한 이성계의 전제 개혁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에 몰수되고 새로운 관리들에게 재분배 되었으나 지주(관리, 귀족 등)와 전호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호는 지주의 토지에 예속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와서는 왕실, 왕족, 관청, 관리의 농토가 다시 확대되어 이러한 토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다.

지주들은 관청 또는 관리이므로 부재 지주로서 도시에 살면서 자기들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장이라는 관리인을 각지에 파견하여 경작을 감독하고 지대를 대신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때로는 이를 도장들이 사복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경작 제도는 엄격한 의미의 소작 제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격상 근대적인 소작제의 기원이라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의미의 소작 제도의 형성기는 한일 합병 후 일본에 의하여 실시된 자본주의적 토지 경작에서부터 시작되어 1949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까지를 가리킨다.

일본은 1910년 토지 조사령을 실시하면서부터 국유지를 동양척석주식회사와 일본인 지주들에게 넘겨주어 자본주의적 지주층을 형성케 하였다.

이로 인해 소작농과 화전민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었고, 농민의 영세화는 더욱 악화되어 1930년에는 소작농이 총 농가 호수의 46.5%, 1932년에는 52.75%로 증가했다.

당시의 지주들은 거의 도시에 사는 부재 지주들이며, 마름(사음)이라 하여 친척이나 측근자를 중간에 내세워 소작인의 감독, 소작료 결정, 징수, 보관, 운송 등을 맡아보게 했다.

소작료의 징수 방법에는 정조법, 집조법, 타조법 등이 있었는데, 정조법은 흉년이나 풍년을 막론하고 일정한 소작료를 받는 것이며, 집조법은 매년 농산물의 추수기에 지주나 마름의 입회 하에 그 해 수확 예상 고를 결정하는 것이고, 타조법은 수확 또는 탈곡할 때 지주나 마름의 감시하에 전 수확고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논은 타조법, 밭은 정조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취하든 실질적인 소작료는 최소 39%에서 최고 90%에 달하는 고율이었으며, 그 후에 비료대, 수세, 운반비, 지세 등을 소작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농민은 항상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농하는 농민이 많이 나타나 일본, 만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고, 혹은 도시에 나아가 토막 민이 되거나 산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빈곤은 소작 쟁의라는 형식으로 분규를 일으켜, 1930년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1934년 [조선 농지령]을 공포, 소작 관계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소작 실시제에 따른 소작 농민의 생활 형편은 1932년의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농민의 52.75%에 달하는 소작농이 총 생산량의 18.2%에 해당하는 양곡을 소비하는 정도였다.

더욱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출제는 소작농의 거의 전부를 질량 농가로 만들었다.

해방 후 소작농에 대한 대책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30% 이상의 소작료 징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누적된 소작농의 궁핍은 여전히 계속되므로 미군정 당국은 앞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농민에게 불하하여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이 당시에 도 농민 중 16%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작농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여 소작제를 없애고 모두 자작농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소작농과 화전민 증가 추세표

농 인 의		계 총 별 분 화			화 전 민	
연 도	지 주	자 작 농	자작겸소작	소 작 농	연 도	수
1919	3.4%	19.7%	39.3%	37.6%	1919	245,626
1930	5.5%	17.6%	31.0%	46.5%	1927	679,088

2. 소작 쟁의

소작 제도가 행해지면서 지주들의 소작료 착취 문제가 크게 말썽을 빚기 시작했다.

이는 소작 농가의 증가와 더불어 그 불편과 반발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고 끝내는 소작 쟁의라는 불씨를 몰고 오는가 하면 폭력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전남 도내의 경우 광주, 순천, 무안(신안), 보성, 해남, 장흥 등이 소작쟁의의 다

발생 지역으로 기록됐고 특히 무안(신안) 59.3%, 보성 69.1%가 최고를 차지했다.

전국적인 소작 쟁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소작 쟁의 발생 건수(1933~1936)

연도별 징수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일본인간 쟁의	12	0.65%	4	0.1%	13	0.1%	13	0.1%
조선인간 쟁의	1,584	80.2%	6,360	84.3%	22,810	88.3%	28,008	93.4%
조선인대 일인 쟁의	270	19.2%	1,178	15.6%	2,997	11.6%	1,948	6.5%
조일외국인간 쟁의			2	0.0%	14	0.1%	6	0.0%
계	1,975	100%	7,554	100%	25,384	100%	29,975	100%

〈조선 총독부 농림국 [조선소작년보] - 초〉

① 암태 소작 쟁의의 전말

1922년 8월 암태면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약자의 살길은 단결과 쟁의”라는 기치 아래 암태 소작인회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회장 서천석, 지도 서창식, 김연태, 손학진, 박응언, 박종남, 간부 김정순, 김문일, 김상규, 박필선, 김문철 등이었다.(투쟁 후 간부 빅복영, 서양호, 조군조 추가)

그리하여 이해 추수기부터 부당한 소작료 불납 동맹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부당한 소작료 인하를 지주측에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쌍방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다.

1923년으로 접어들면서 지주측은 소작료 납부를 강력히 독촉했고, 이 과정에서 쌍방간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드디어 그 해 7월말 경에는 흥분한 소작인들 1천여명이 들고일어나 암태면 남강진 지주 문모씨 집으로 몰려갔다.

이로 인해 지주 문씨 측과 일부 소작인간에 충돌 사태가 벌어져 쌍방에서 수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 사실이 목포에 전해지자 지주 문모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경 백여 명과 헌병 약 천명을 암태면에 출동시켜 군중을 해산시켰으며, 주동자로 서천석, 서창식, 손학진, 김연태, 박응진, 박종남, 박필선 김문철, 김문일, 윤학중 등 12명을 체포, 목포형무소에 수감시켰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소작인들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렀고, 범선 수십 척을 동

원해서 분승한 후 목포에 나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외치면서 목포경찰서를 둘러싸고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 날은 재판소로 몰려가 3일 동안을 단식 농성했다.

아사 동맹에 당황한 일제 당국은 부윤, 재판장, 서장, 도경찰부 고등계장 등이 나와서 요구 조건을 들어 줄 것을 회유하는 한편 당시 상해 임정에서 귀국 중이던 박복영과 질충, 뒷수습을 꾀했다.

그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주에서 석방되고 서천석 등 몇 사람만 대구 복심법원에 상고하여 서천석만 1년반을 언도 받았는데 미결심 2년반을 통산하면 4년이 나 된다.

이 투쟁기간 중 특기할 것은 암태 출신 재목 인사들의 위문이었으며, 대지주 천모씨는 귀향 선비로 금일봉을 내놓았고, 미국과 일본 교포들도 성금을 보내 왔다.

또 대구 투쟁시에는 당시 조선인 변호사로 이름 높은 김병로, 이인 등이 서울에서 오르내리며, 무료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투쟁으로 인해 소작 조정령이 생기고 소작료 비율이 지주와 소작인 7대3에서 4대6으로 바뀌어 소작인은 6할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된 것이다.

암태 소작 쟁의 후 전국의 소작료 비율이 재 조정됐으며, 1934년에는 조선 농지령이 공포됐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경성에서는 전국 농민 조합 연합회가 조직되고 목포에서도 목포 농민 조합이 생겼다.

간부들의 투옥 당시에는 박복영, 김상규, 김정순, 서동호 등이 뒷 수습을 맡아 했다.

이밖에 자은, 비금, 하의, 도초면 소작인회 조직과 투쟁에 있어서도 암태 소작인회가 직, 간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암태 소작 투쟁은 생존권을 위해 일어선 정의의 투쟁이며, 민족 정기와 배일 사상에 연유한 것으로 이른바 “암태의 얼”을 낳게 한 정신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불멸의 자랑거리로 이어 오고 있다.